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 확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7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9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
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추가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을 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 ----- ----- ----- -----

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
를 위한 어린이집

8. ~ 13. (생략)
 <신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

1. ~ 6. (현행과 같음)
7.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같은 법 제9조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같은 법 제21조제3항-----

8. ~ 13. (현행과 같음)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다만, 대표자 및 장

② ~ ⑬ (생략)	<u>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u> ② ~ ⑬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는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각 호 생략)

-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 각호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 개정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²⁾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 지원센터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³⁾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건강검진,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 과정에서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장애인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특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⁴⁾되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등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상담·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비의료인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상 공백을 보완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로 한정하여 장애인 보호의 필요성과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장애아동지원센터는 2026년 7월 기준, 중앙 1개소와 지역 17개소가 운영 중 또는 개소 준비 중(11개소)이며, 종사자 정원은 총 106명임.
-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26년 7월 기준, 중앙 1개소와 지역 17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비의료인 종사자는 총 81명임(참고자료 1: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현황).

□ 다만, 개정안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적용 대상 및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포함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운영·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설자’와 ‘의료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⁵⁾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운영 기준⁶⁾에서는 별도로 센터장을 두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대표자’가 지정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센터장 중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개정안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취업제한 적용 대상을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로 한정하고 있는데,

취업제한 명령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

5)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3. 인력 기준

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장애인건강보관관리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중앙센터장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3. 인력 기준

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이하 “지역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장애인건강보관관리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지역센터장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공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적용 대상을 조직상의 지위인 ‘직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⁷⁾

참고로, 유사한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 대상을 각각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노인복지법」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7) ‘직위’는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함.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은 직위를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음(「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셋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소속 직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채용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⁸⁾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어 현행 취업제한 제도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벌금형은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제한기간도 서로 다르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기관 역시 법률상 국립재활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포함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개정안에 동의함.
- ☐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조직상의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단서를 “다만, 센터장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나. 한국장애인개발원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이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지역센터의 운영을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시설 내 동선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비대면 종사자와 장애인 간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직무 구분만으로 안전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다만, 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센터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현황〉

1) 장애아동지원센터(2026.7.)

구분	개 소 연 월	종 사 자 수	종 사 자 의 주 요 업 무
중앙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12.10.	4명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교육 및 평가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장애아동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8. 예정	7명	- 대상자 발굴 - 장애아동 및 가족복지 지원 정보제공 - 조기개입서비스 홍보 및 제공 -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 조직운영(회계, 행정, 인력 사무)
부산광역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8. 예정	6명	
대구광역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7.	6명	
인천광역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6명	
광주광역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6명	
대전광역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5.	6명	
울산광역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5.	6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4명	
경기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7.	9명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6명	
충청북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7.	6명	
충청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8. 예정	6명	

구분	개소연월	종사자 수	종사자의 주요 업무
전라북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6명	
전라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6명	
경상북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6명	
경상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2026.05.	6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준비중	4명	
합계	18	106	

주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9)에 따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중앙·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함.

주2) ‘준비중’으로 표시된 센터의 종사자 수는 확정된 정원으로, 현재 해당 인원내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임.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2026.7.)

구분	지정연월	비의료인 종사자 수	비의료인 종사자의 주요 업무
중앙장애인보건의 료센터 (국립재활원)	2018. 03	9	장애인건강보건관련 종 사자 교육,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홍보, 행 정, 연구
서울남부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 터(보라매병원)	2018. 04	4	
대전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2018. 05	4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구분	지정연월	비의료인 종사자 수	비의료인 종사자의 주요 업무
경남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8. 04	4	보건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교육,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행정
서울북부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 터(서울재활병원)	2019. 04	5	
강원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강원도재활병원)	2019. 04	4	
전북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	2019. 05	5	
인천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인하대학교병원)	2020. 06	4	
부산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동아대학교병원)	2020. 06	4	
경기남부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 터 (분당서울대병원)	2020. 06	5	
제주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2020. 06	3	
대구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칠곡경북대병원)	2021. 07	5	
광주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전남대병원)	2021. 07	5	
충북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충북대병원)	2021. 07	3	
경북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경북권역재활병원)	2021. 08	4	
경기북부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 터(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22. 10	5	
충남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022. 10	4	

구분	지정연월	비의료인 종사자 수	비의료인 종사자의 주요 업무
전남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순천의료원)	2022. 12	4	
합계		81	

주1):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되어 의료인 등은 현행법에 따
른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나, 비의료인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
라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비의료인 종사자 현황과 주요 업무를 기재함.

자료: 보건복지부